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19

발의연월일 : 2023. 2. 15.

발 의 자:전해철·김회재·이인영

임종성・김민기・황 희

김민석 · 정태호 · 김종민

이동주・박 정・양기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또는 통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후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환경부장관이 기존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5년주기로 업종별 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함으로써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임.

그런데 배출시설등의 신설·증설·교체 또는 변경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등이 발생하여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 빈도가 높아, 새로운 변경허가를 받을 때마다 변경허가일이 변경됨. 이로 인해 현행법 상 재검토의 기산일이 매번 새로운 변경허가에 따라 연기되므로 사실상 허가

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없어 제도가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의 신설·증설·교체 또는 변경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최초 허가일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등의 신설·증설·교체 또는 변경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사업자의 최초 허가일(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처음으로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5년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허가에 대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에 관한 적용
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의 변경) ① (생 략)	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도 불구하고 배출시설등의 신
	설・증설・교체 또는 변경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
	질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등
	이 발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자
	가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
	<u>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u>
	자의 최초 허가일(같은 조 제1
	항에 따라 처음으로 허가를 받
	은 날을 말한다)부터 5년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조
	건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허
	가배출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u>제2항</u> 에 따른 허	<u>④</u> <u>제3항</u>
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	
경절차, 검토 주기 및 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